

## 미얀마의 분쟁해결제도와 비즈니스협상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nd Business Negotiation of Myanmar

정용균\*

Yongkyun Chung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론
  - III. 전통시대의 미얀마 분쟁해결제도
  - IV. 현대 미얀마의 분쟁해결제도
  - V. 비즈니스협상문화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미얀마, ADR, 담마땃, 라자땃, 프야톤, 협상, 중재법

\* 국립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

## I. 서론

최근 신남방정책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고임금으로 기업들의 진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얀마는 아세안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1)</sup> 미얀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6천만 명의 인구, 중국, 인도와의 접경을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 등 투자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sup>2)</sup>,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서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국가이다.<sup>3)</sup> 법질서 관점에서 볼 때, 미얀마는 법다원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보통법을 계수하고, 버마족 이외 일부 종족들의 관습법을 인정하는 한편, 버마족은 자체적으로 불교 法典인 담마땃(Dhammathat)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다수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인 연유로 국내 종족 간 분쟁이 많은 실정이다.<sup>4)</sup> 더구나 향후 미얀마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볼 때, 미얀마의 분쟁해결문화와 분쟁해결제도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미얀마의 분쟁해결제도는 이미 오래 전에 현대적인 사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Huxley(1995, 1997, 2001),<sup>6)</sup> Zan(2000)<sup>7)</sup>, Ryugi(1984, 2000, 2003)<sup>8)</sup>, Lingat(1949)<sup>9)</sup>, Maung(1963)<sup>10)</sup> 등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미얀마는 15세기경부터 법원

1) 최근 미얀마는 과거에 비하여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등 일차산업의 비중은 2000년에 57.2퍼센트에서 2009년 38.2 퍼센트로 하락한 반면,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비중은 2000년에 24.4 퍼센트에서 2009년 37.4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정성훈·권오윤, “미얀마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4호, 2011. pp.177-201.

2) 조은래,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소고”,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2, p.443.

3) 정용균·하홍열, “국제개발협력력을 통한 BOP비즈니스모델연구: 아세안시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제21권 제1호, 2017. pp.247-279.

4) 최근 로힝야족 인종분쟁 문제에서 보듯이 이러한 분쟁사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종족인 버마족과 기타 카친족, 카렌족 등 여타 산지에 거주해온 부족들과의 분쟁 역시 간과할 수 없다.

5) 미얀마 현지 근로자와 투자국의 현지 공장의 경영충간의 분쟁이다. 이러한 노사분쟁은 미얀마뿐 만 아니라 그 보다 앞서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정용균, “인도네시아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ADR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25권 제3호, 2016. pp.73-108. 정용균, “태국의 분쟁해결 및 협상전략: Hofstede의 비교문화경영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한국태국학회, 제21권 제1호, 2016. pp.91-136. 정용균, “베트남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전략: 지역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pp.221-262.

6)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p.47-95.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p.63-91. Huxley, Andrew, “Positivists and Buddhists: The Rise and Fall of Anglo-Burmese Ecclesiastical Law”, *Law and Social Inquiry*, 2001. pp.113-142.

7)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2000, Vol.44, pp.40-72.

과 판사<sup>11)</sup>, 변호사<sup>12)</sup>가 존재하였으며, 법원(法源)으로 법전(法典)인 담마땃(Dhammathat), 왕의 칙령인 라자땃(Rajathat), 판례집인 프야톤(Phyatthons)이 존재하였다. 특히 민사사건에는 담마땃이 활용되었으며, 형사사건에는 라자땃이 사용되었다.<sup>13)</sup> 이처럼 변호사라는 전문직종이 수백 년간 존재하고, 성문법전이 존재한 사례는 유럽대륙 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얀마(버마)의 분쟁해결제도는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담마땃은 현대에 와서도 버마불교도법으로 전환되어 현대 미얀마 가족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14)</sup> 근대에 이르러서는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미얀마의 법률제도는 영국의 보통법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보통법을 계수하였다. 따라서 현대 미얀마는 보통법과 관습법이 병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미얀마의 법다원주의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게 된 것은 최근 미얀마가 개방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나서게 되는데 기인한다. 이미 미얀마는 독립하기 직전인 1944년에 현대적 의미의 중재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과의 통상에 대비하였으며,<sup>15)</sup> 2013년 4월 16일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미얀마정부는 최근에 이르러서 2016년 신중재법을 제정하였다.<sup>16)</sup> 미얀마 신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따라서 제정한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불교문화와 낫 신앙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문화적 전통을 살펴본다. 둘째, 미얀마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본다. 셋째, 현대의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현대 ADR 제도를 살펴본다. 넷째, 미얀마의 협상방식을 개관한다.

8) Ryuji, Okudaira, "How Judges Used Dhammathats (Law Books) in Their Courts in 18th - 19th Century Myanmar(Burma) with Special Reference to Yezaijo Hkondaw Hpyathto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No.66, 2003. pp.319-329.

9) Lingat, R., "Evolution of the Conception of Law in Burma and Siam", Lectures delivered before the Siam Society on Wednesday 9th March 1949. pp.9-31.

10)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11) 그러나 판사의 역할은 현대적 의미에서 중재인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학슬리교수의 견해로는 이미 12세기부터 버마에 변호사들이 존재하였으며, 1550년경부터 1620년 경 사이에 변호사들이 번성하였다. Huxley, Andrew, "Burma: It Works, But Is It Law?" *Journal of Family Law*, Vol.27, 1988-1989, p.24,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79.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ing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2000, Vol.44, p.44.

13) Myaing, A. Aye, *History of Judicial System in Konbaung Period*, Mandalay, 2007.

14) 문홍안,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제28권 제2호, 2014, p.310.

15) Khin, E. Ei, "An Overview of Arbitration in Myanmar", 2007.

16) 안건형, "캄보디아와 미얀마 중재법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9권 제2호, 2018, pp.111-136. Finch, James and Thida, Aye,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Myanmar's Arbitration Law",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12, No.1, 2016. pp.235-252.

## II . 연구방법론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은 지역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지역연구 방법론을 채택하는 이유는 첫째, 지역(region)마다 독특한 문화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밀턴 오스본(1997)은 “동남아시아가 인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권을 이룬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sup>17)</sup> Gupta, et. al(2002)에 의하면, 남아시아문화는 동북아시아 유교문화권과는 차이가 있다.<sup>18)</sup> 신윤환(2008) 역시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서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sup>19)</sup> 이처럼 동남아시아문화권은 여타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별 차이도 존재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 관점에서 미얀마는 이미 오래 전에 현대적인 사법제도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얀마는 적어도 15세기경부터 법원과 판사, 변호사가 존재하였으며, 법원(法源)으로 관습법인 담마땃(Dhammathat), 왕의 칙령인 라자땃(Rajathat), 판례집인 프야톤(Pyatton)이 존재하였다.<sup>20)</sup> 따라서 분쟁해결제도를 탐구하는 영역에서 볼 때는, 미얀마(버마)는 다른 동남아국가들과도 차별성이 커서, 지역연구방법으로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sup>21)</sup>

둘째,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분쟁해결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쓰보우치 요시히로(1998)에 의하면, 지역연구 방법론의 특징은 하나의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sup>22)</sup> 특히 미얀마의 경우는 法源이 불교 문헌이기도 한 담마땃이기 때문에, 종교와 분쟁해결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서로 연결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헉슬리교수(1995)의 견해에 따르면, 담마땃은 단순히 불교문헌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담마땃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수가 제작되었으며, 이 제작과정에는 왕과, 법률가 집단과 승려집단, 3자간의

17) 밀턴 오스본(조흥국 역) (2000), 「한권에 담은 동남아시아역사」, 오름, p.17.

18) Gupta, Surie Javidan and Chokor, “Southern Asia Cluster Where the Old Meets the New?”,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37, No.1, 2002.

19) 양계적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가 높고 여성의 활동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보았다.

20) 학자들에 따라서 버마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약간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헉슬리교수의 명칭을 따랐다.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54.

21) 일례로 베트남에는 담마땃과 같은 불교 법문헌이 전해지지 않는다. 담마땃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 전해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 전해진 담마땃은 소실된 것이 많으나, 미얀마에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으며, 미얀마는 왕조에 걸쳐서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담마땃을 제작해왔다. Huxley, Andrew, “Positivists and Buddhists: The Rise and Fall of Anglo-Burmese Ecclesiastical Law”, *Law and Social Inquiry*, Vol.26, No.1, 2001.p.116.

22) 쓰보우치 요시히로, “전문분야와 지역연구”, 야노 토루(아시아지역연구회 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pp.72-93.1998, pp.72-73.

권력투쟁이 관련되어 있다.<sup>23)</sup> 왕은 백성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담마땃을 제작하였으며, 한편 Kaingza<sup>24)</sup>로 대표되는 법률가 집단은 법정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담마땃을 활용하거나 제작하는데 참여하였다. 불교 승려들은 담마땃의 위상을 종교적 권위와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얀마의 법률문헌인 담마땃을 연구하는 데는 정치적, 법률적, 종교적인 관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미얀마에 대한 국내문헌이 많지 않아서 미얀마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오랜 기간 동안 서방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얀마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미얀마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는, 헉슬리 교수가 개탄하듯이, 최근 20년 동안 담마땃 일차 사료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나, 이를 해석할 연구자들이 소수인 관계로 연구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헌부족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이나 협상전략 자체에 대한 문헌만을 고려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서 여러 전문분야의 연구업적들을 적극적으로 종합하는 지역연구방법이 적합하다.

### Ⅲ. 전통시대의 분쟁해결제도

#### 1. 미얀마 문화

분쟁해결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국가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미얀마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은 종교와 종족 구성, 생활양식일 것이다. 미얀마의 종교는 상부구조로는 상좌부 불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하부 구조로는 정령신앙으로 분류되는 낫 신앙이 생활화 되어 있다. 또한 미얀마는 150 개 이상 언어가 사용되는 다 종족 국가이며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도 일부 존재한다.

##### (1) 다 종족 사회와 분쟁

미얀마의 종족 갈등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얀마가 다 종족 사회이며, 현재의 버마계 주민들도 원주민이 아니라 원래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몬 족 국가를 멸망시키고 이주한 종족이라는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미얀마의 여러 왕조들은 다수 종족 간 상호작용

23) 헉슬리교수는 담마땃을 제작한 저자들과 제작 동기를 역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왕과 법률가 집단과 승가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긴장관계가 새로운 담마땃을 제작하게 된 동기라고 설파하고 있다.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p.73-91.

24) Kaingza는 당시 버마궁정의 법무부장관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다.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82. Ryuji, Okudaira, "The Role of Kaingza, Manuyaza, An Eminent Jurist of the 17th Century in the Development of the Burmese Legal Histor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No.27, 1984, pp.181-186.

을 하면서 현대에 이르기 까지 생존해 왔다. 따라서 미얀마에서의 종족은 하나의 고정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종족이라기보다는 여러 종족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생겨난 측면이 있다.<sup>25)</sup> 신윤환(2008)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족형성기에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 다수 종족으로는 미얀마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버마족이 이에 해당하며, 인도인이나 중국계 화교가 도시의 소수종족에 해당하며 지방의 소수 종족으로는 여카잉족, 산족, 몽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카친족, 카렌족, 친족등이 이에 해당한다.<sup>26)</sup>

미얀마는 국토가 중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험준한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열대 특유의 비, 인프라시설이 부족하여 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종족 및 부족간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크며, 문화 보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미얀마 국가 전체의 통합력이 강하지 못한 국가이다. 이 결과, 산지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을 향유하고 있다.<sup>27)</sup> 종교적 갈등은 여러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얀마의 경우 불교도가 전체 인구의 약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슬람교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버마족의 경우 기독교를 믿는 비율은 불과 0.1%에 불과하지만, 소수민족들 가운데는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다.<sup>28)</sup> 한편 영국의 식민정부는 카렌족들을 행정 관료나 식민지 군대의 전위부대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 결과 카렌족은 영국의 식민통치 기간 중 영국 정부의 편을 들었다. 이는 독립 후 카렌족과 다수 종족인 버마족 간의 인종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로힝야 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서, 불교와 충돌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인종적으로 서남아시아계통에 가까워서 미얀마의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25) 미얀마 종족집단은 하나의 공통된 문화를 근거로 형성되어 결집되어 있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주변의 종족 집단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차별화되고 의식화된 사회적 범주, 또는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승윤,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149. 미얀마에는 3개 어족이 있다. 중국-티베트어족, 몽-크메르어족, 타이-까다이어족이 그들이다. 중국-티베트어족에 해당하는 종족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며 버마족, 까친족, 까잉족 친족이 여기에 속한다. 몽-크메르어족에는 몽족과 와족이 있으며 산족은 타이-까다이어족에 속한다. 동남아의 종족은 보통 다수 종족, 도시의 소수종족, 지방의 소수종족, 그리고 부족의 네 가지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장식, 미얀마(버마)의 종족집단과 종족 분쟁, 「지역연구」, 제2권 제4호, 1993. p.64.

26) 양승윤,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151.

27) 김성현, 「미얀마 종교와 사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p.105.

28) 예를 들어 까잉족은 현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와 충돌을 빚고 있다 (박장식, 1993). 카렌족에 대한 기독교 선교사들의 선교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어났으며 1832년 카렌족 문자가 서양인 선교사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영국은 식민지배 초기에 버마계 무장집단과 빈번한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때 카렌족들은 정글로의 안내인 역할을 하였다. 식민통치가 완성된 이후 영국식민정부는 버마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중앙평원지역은 영국식민정부가 직접 통치하였으며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변경지역은 각 종족집단의 고유의 통치체도를 인정하는 간접지배 방식을 취하였다. 이상국, “또 다른 식민성: 버마 종족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카렌족의 식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한국동남아학회, 제22권 1호, 2012, p.21.

## (2) 낮 신앙

미얀마의 무속신앙의 신을 낮이라고 한다.<sup>29)</sup> 낮은 원래 인간이었다가 신이 된 경우에 붙인다. 낮은 부처 앞에 갈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잔인한 힘세고 질투심이 많다고 하여 미얀마 사람들은 메이사라고 부른다. 낮은 힘이 강하여 인간에게 선악의 영향을 주는데, 잘 모시면 인간을 도와주고 아니면 해를 준다고 믿는다. 낮 신앙이 미얀마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불교가 미얀마에 도입되기 이전에 있었으며 버마족이 11세기에 동 지역에 지배적인 민족이 되기 이전, 미얀만 중부지역을 지배하였던 뿌 족 시대부터 낮 신앙이 존재하였다고 전해진다.<sup>30)</sup> 그중에서 미얀마를 대표하는 낮은 흔히 37낮이다. 처음 37개 낮을 만든 사람은 11세기 아노라타 왕이었다. 왕은 버강 왕조를 열면서 소승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독실한 불교도였던 아노라타 왕은 처음에 민간에 성행하던 낮 신앙을 없애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왕은 기존의 낮 신앙을 불교의 휘하에 편입시켜 공식화 시켰다. 아노라타 왕은 먼저 32개 각 지역에 영향력이 큰 낮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힌두교에서 온 4개의 신을 더하고 맨 위에 불교의 자가민(인드라)을 세워 최종적으로 37 낮을 만들었다.<sup>31)</sup>

## (3) 불교와 분쟁해결

국가와 불교 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 미얀마 왕조들의 역대 통치자들은 다 종족 국가인 미얀마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불교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왔으며 많은 파고다를 건립하여 왔다. 국가는 승려집단인 승가에 금전, 토지, 건물 등 공덕 행위를 통하여 후원하고, 불교는 승가의 담마(法)를 통하여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양자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sup>32)</sup> 미얀마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불교는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법률 제정 및 사법기관의 역할에 있어서도 불교 승려집단인 상가는 지대한 역할

29) 미얀마에서는 불교도에게 낮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면 상당수가 겸연쩍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사코 이를 부인한다. 이들의 태도로 볼 때, 사실상 미얀마 인들은 낮에 대한 신앙이 상상 이상으로 두렵고 깊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얀마의 상좌부 불교는 보다 나은 재생을 위하여 현세에서 오로지 공덕을 쌓는 것이 중심인 이상불교인 반면, 낮 신앙의 경우는 바나나 차 연꽃 등을 바쳐서 현세에서의 목적을 성취할 것을 기원한다. 따라서 낮 신앙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296.

30) 조홍국, “소승불교 동남아시아의 민간신앙, 태국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한국민속학회, 제9권, 2001, p.131.

31) 황루시, “미얀마 샤머니즘의 개관과 연구동향”, 『한국무속학』, 한국무속학회, 제22집, 2011, pp.89-134. 조홍국, “소승불교 동남아시아의 민간신앙, 태국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한국민속학회, 제9권, 2001, p.131.

32) 미얀마 왕조사를 살펴보면, 버간 왕조의 야노여타 왕, 따웅우 왕조의 버인나웅 왕, 끈바웅 왕조의 알라웅페야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배자들의 통치권은 왕실 주변에 국한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정된 지역만을 통치하고 있던 왕조 지배자들은 통치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당시 버마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불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불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치권의 확대를 꾀하여 왔다. 이상국, “또 다른 식민성: 버마 종족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카렌족의 식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한국동남아학회, 22권 1호, 2012, p.8.

을 수행하였다. 16세기에는 버이나웅 왕은 12인의 승려로 구성된 승려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미얀마 법전요설」을 편찬하게 하였다. 또한 승려들은 마을 사람들의 예의 범절과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권면하였고 준법과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타이르고 훈계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33)

## 2. 버마의 전통적 분쟁해결제도

### (1) 사법제도

미얀마의 전통적인 사법제도의 특징은 매우 형식적이며,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AD 1,795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버마대사로 부임했던 Symes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버마 수도였던 만달레이의 재판소에서 진행되었던 재판절차는 지구상 어느 재판소보다도 더 형식성이 강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4)</sup> 미얀마 고유 관습법의 법원(法源)은 불교 윤리와 법률적 내용이 담긴 담마땃과 통치자인 라자(rajā)들이 반포한 칙령 등으로 구성된 라자땃(rajathat)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sup>35)</sup> 그러나 버마관습법의 대가인 헉슬리교수는 여기에 법률판례집인 Pyatton을 포함시킨다.<sup>36)</sup> 변호사 등 법률관계를 다루는 전문직업의 존재는 미얀마 이전에는 5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7)</sup>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이들과는 독립적으로 12세기경에 벌써 변호사 직업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sup>38)</sup> 그러한 점에서 버마사회는 분쟁해결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여타 동양권 사회와는 별도로 매우 독특한 사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3) 예를 들어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조세납부가 지연될 때에는 대교구장인 가잉축(Gaingchok)이나 교구장인 가잉옥(Gaingok)이 정부를 대신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요청되는 일이 흔하였다. 더 나아가 승려집단은 준 사법기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불교 신도가 피고가 되어 속세의 법정에서 서게 되면, 법정에서 서기 전에 세야도가 피고를 위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승려들은 속세의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된 중죄인들이 형이 집행되기 이전에 사면시킬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생명이 구함을 받은 중죄인은 사원의 머슴이 되었다. 김성현, 「미얀마 종교와 사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pp.146-147.

34) Huxley, Andrew, "Positivists and Buddhists: The Rise and Fall of Anglo-Burmese Ecclesiastical Law", *Law and Social Inquiry*, Vol.26, No.1, 2001, p.115.

35) Lingat, R., "Evolution of the Conception of Law in Burma and Siam", Lectures delivered before the Siam Society on Wednesday 9th March 1949, p.18.

36) 일종의 판례집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판례집은 현대 법학에서의 판례집을 연상시키는 차원의 전문적인 성격의 판례집은 아니다. 헉슬리교수는 프야톤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신화적 판결들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사회에 대한 이론적 분석, 나머지 한 종류는 법률보고서이다.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78.

37) BC 5세기 경 그리스, BC. 1 세기 경 로마제국, AD 10세기경 이슬람 칼리프왕국, AD 13세기의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 법률 전문직이 별도로 있었다고 전해진다.

38)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pp.41-42.



### 1) 담마땃(Dhammathat)과 라자땃(Rajathat)

담마땃의 원천은 힌두 브라만교에서 신성시되어 온 마누법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힌두교 전설에 의하면, 현명한 왕이 현자인 마누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업무를 맡겼다. 나중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누조차도 실수를 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마누는 왕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하고, 일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불멸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기록한 것이 마누법전이다.<sup>39)</sup> Lingat 교수는 담마(dhamma)를 서양법학에서 자연법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미얀마의 담마땃은 마누법전의 원형을 담은 담마사스트라를 버마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즉 형식은 담마사스트라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여기에서 힌두교적 요소를 배제하고 이를 상좌불교의 내용으로 대체하였으며 버마 고유의 관습법적 내용을 넣어서 융합하여 탄생시킨 것이 담마땃이다.

담마땃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대체로 담마땃이 법원 현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Stanton (2014)은 “담마땃은 일반적인 의미의 법률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도덕이나 예절과 관련이 있다”. “버마 법정에서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담마땃이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영국의 법정에서 성서를 인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40)</sup> Stanton이 인용한 19세기 미얀마 주재 영국인 판사는 “담마땃에 있는 규칙들은 그 자체가 논리적 용어로 명확하게 진술된 명제가 아니다. 만약 담마땃에 있는 규칙들을 영국의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sup>41)</sup> 그러나 Ryuji(2004)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류지교수는 판례집의 하나인 Yezajyo Hkondaw Hpyathton를 분석하였다. 동 판례집은 AD 1,825년, 미얀마 법정에서 내려진 47개 판결문을 수집한 책이다. 이 중에서 32개 판결문이 온전히 남아있다. 류지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Jataka(부처출생기), Dhammagan(부처의 가르침), 빨리어 불경 등 다양한 법원(法源)을 활용하였으며, 이들을 서로 비교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은 담마땃이었다.<sup>42)</sup> 따라서 法源으로서 담마땃의 중요성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담마땃의 기능을 과소평가하게 된 것은, 판사의 역할이 무엇이나에 대해

39)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40) Stanton, H. Thomas,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utionary Tale of Colonial Burm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2014, Vol.1, No.1, p.170.

41) 담마땃은 지시하기 보다는 설명하고 토론한다고 말해진다. 담마땃은 그 당시의 버마 사회를 반영한다. 담마땃은 사회의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 관습이 명확할 때에는 사회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원칙이 된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원칙이 경합할 때에는 혹은 적절한 관습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가장 형평에 맞는 원칙이 채택되었다. Stanton, H. Thomas,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utionary Tale of Colonial Burm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1, No.1, 2014, p.170.

42) Okudaira, Ryuji, “How Judges Used Dhammathats (Law Books) in Their Courts in 18th -19th Century Myanmar(Burma) with Special Reference to Yezajyo Hkondaw Hpyathto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No.66, 2003, pp.325-326.

서 오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일부 학자들은 상당수 버마의 담마땃을 오늘날의 법전(法典)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혁슬리교수(1997)는 “17세기 캄보디아 법률문헌을 20세기 미국 코네티컷 주의 법률 문헌과 동일시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즉 캄보디아의 법률 문헌은 현대와는 다른 가정 하에 기술된 것이라는 것이다.<sup>43)</sup> 위에서 전술한 두 가지 극단적 견해에서 벗어나서, 혁슬리 교수 견해로는 미얀마에서 성문법의 성격은 글자 한 자, 토씨 한 자까지 유의하는 오늘날의 문언적 법해석과는 달리,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하여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44)</sup> 따라서 당시 미얀마 법정에서 담마땃은 오늘날의 법정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보다는, 법관의 융통적인 해석 비중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미얀마의 전통적 정의(traditional justice) 개념은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류지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판사들이 참조한 법원의 상당수는 *Jataka*, *Dhammagāna*, *Paṭiśāy* 불경들이었으며, 담마땃은 이들보다도 정교한 법전이였다. 예를 들어, 담마땃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Maung*(1963)에 의하면, 담마땃은 18개 세 부분과 법으로 세분하고 있다. 부채 계약법, 혼인에 있어서 주고받는 물품에 관한 법, 물품의 판매와 구입법, 노예법, 상속법, 도박법, 공격·상해법, 절도법, 고용법, 간통법, 토지분할법, 재산 구입법, 비난 관련법, 재산 보유법, 모기지법, 이혼법, 두발 달린 동물에 관한 법, 네발 달린 동물에 관한 법으로 세분되어 있다.<sup>45)</sup> 이처럼 담마땃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담마땃이 법정에서 단순히 격언을 인용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인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Zan*(2000)이 분석한 왕의 칙령에 의하면, 판사들은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담마땃을 언급하라고 되어 있다.<sup>46)</sup> 그리고 더 나아가 칙령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러 담마땃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마땃의 제작년도와 장소를 고려해서<sup>47)</sup>, 담마땃에 기재되어 있는 규칙을 적용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편 *Huxley*(1997)교수는 미얀마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할 때, 담마땃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세

43)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65.

44)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75.

45)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p.10-11.

46)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p.64.

47) 혁슬리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버마 사회에서 담마땃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구술형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다. 적어도 9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러서 구술형태의 법률은 문자로 옮겨져서, 성문법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담마땃은 일종의 성문법전이였다. 혁슬리교수는 이러한 법률상의 혁명은 당시 버마사회가 화전민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벼농사 위주의 경제구조로 변모하면서, 통치자들이 국가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데 그 이유를 찾고 있다.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75.

기 중반부터 17세기 초까지 버마에서 변호사 직종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버마 변호사들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복사한 담마땃 문헌들을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담마땃 문헌으로는 상대방 변호사의 논리를 격파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새로운 담마땃을 추가로 수집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본다.<sup>48)</sup> 판사나 변호사에 관한 증거와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담마땃은 법정 현장에서 판사에게나 변호사에게 공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 2) 판사

국왕이 내린 칙령인 라자땃(칙령)을 분석해 보면 미얀마 전통사회에서 판사들은 담마땃에 언급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증인들을 조사해야 한다.<sup>49)</sup> 세 가지 칙령이 동일 시점에서 반포되었는데 여기에는 뇌물을 받은 판사에 대해서는 제제내용이 없는 대신에,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는 8가지 위험과 10가지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sup>50)</sup> 판사는 분쟁당사자를 심문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영미법에서의 판사 보다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사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경우 이를 중지시킬 의무도 부여받고 있었다.

미얀마 전통사회에서 판사는 국왕 칙령을 분석해 보면, 분쟁당사자들에 대한 심문권은 있으나 증인들에 대한 심문권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Zan 교수는 판사의 역할이 당시에 당사자들 간의 조화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sup>51)</sup> 즉 판사는 당시에 현재의 중재인이나 조정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마땃을 참조 언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판사는 담마땃에 쓰여 있는 규칙들이 담마땃 제작시의 시간과 장소의 맥락 하에 제작된 점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Zan 교수는 이러한 언급은 17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담마땃을 17세기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때, 이를 반영하여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점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법철학 사고를 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당시의 공식적인 소송절차는 1단계로 판사가 양 당사자를 심문한다. 2단계로 판사는 양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증인의 증언을 증인이 선서를 행한 후에 증언하게 한다. 3단계로 판사 자신이 증언을 저울질 하고 사건을 조심성 있게 조사한다. 4단계에서 판사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결정한다.

48)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79.

49)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p.58.

50)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p.63.

51)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p.64.

전통적으로 버마의 정의에 의하면 여섯 종류의 판사가 존재하였다. 첫째,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을 잘 해결하면 그들이 가장 최선의 판사이다. 둘째, 분쟁당사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중재인을 한 명 이상 지명할 수 있었다. 이 때 이들 중재인들은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그러나 공식적으로 지명되었고 중재인으로 승인되었다. 셋째 이러한 분쟁해결기구 위에 해당 지역 공무원이 있는 법원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넷째, 미얀마 수도에 민사고등법원이 존재하였으며 다섯째 국왕이 정의의 수호자로 있었으며 대법원과 추밀원이 결합된 형태인 Hluttaw가 있었다.<sup>52)</sup>

### 3) 소송절차

법정에서의 소송절차는 문서로 된 고소장을 낭독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나칸(nakhan)이라 호칭되는 조수에게 사건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판사의 조수는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아마도 증인들도 조사한 다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정해져서 그 날에 심리를 한다. 그리고 이때 변호사도 선정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들과 증인들에 대한 필요한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판사가 쟁점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판사는 이와 동시에 누가 입증 책임이 있는지 선포한다. 이 뒤에 증인들이 심문된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만약 당사자들이 판결에 따를 것에 동의하면, 그들은 양 당사자들은 차 한 잔을 마신다. 그리고 판결은 최종판결이 된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한다. 때로 당사자 일방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는 감옥에 일시적으로 감금되고 판결에 따를 것이 강제된다.<sup>53)</sup>

### 4) 증거법칙

증거법칙의 경우, 서증이 증언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서증이 있을 때에는 이 문서가 제출되고 증빙되어야 하고 만약 서증이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증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말 많은 사람이나 병자, 노인, 어린이, 도박꾼, 대식가, 다혈질인 사람, 도둑, 가수와 같은 사람들은 증언자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여배우, 임신부나 평판이 안 좋은 여성도 무능력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무능력자 가운데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증언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여성이 신뢰성이 있으면 허용되었다. 여성이 증언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여성이 체질이 약하고 그들의 신뢰성이 남성에 비하여 열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증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끔찍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게 하였다.<sup>54)</sup>

52) Khin, E. Ei, "An Overview of Arbitration in Myanmar", 2007.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15.

53)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15.

54)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17.

### 5) 변호사

미얀마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12세기부터 변호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이다. Maung(1963)과 Huxley(1988/1989)의 버마 관습법 연구에 의하면, 변호사 관련 직업이 12세기부터 미얀마의 사법제도 안에 확립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sup>55)</sup> 헉슬리교수(1995)에 의하면, 19세기 미얀마에 변호사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한 종류는 평민변호사(she-ne)였고 다른 한 종류는 승려 변호사(vinaya-dhara)였다.<sup>56)</sup> 현대에 이르러 국왕의 칙령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는 변호사의 활동을 구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즉 변호사들은 특별한 의상을 입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들은 도시의 특별한 구역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sup>57)</sup> Zan교수는 국왕의 칙령에 대한 직역부분에서 “변호사들은 도시 내에서 거주하면 안 되고 도시 외부에 별도의 주거시설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58)</sup>

또한 변호사들은 특정 장소에서 집단으로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버마 왕궁의 관리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분쟁당사자들 고객들이 변호사들과 쉽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변호사들은 일반인들보다도 사건을 다룰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이들은 보수로서 사건 금액의 10분의 1을 받도록 허용되었다. AD 1,636년에 반포된 국왕의 칙령에는 변호사들의 윤리와 기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변호사들은 자신의 법률 지식의 관점에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게 법정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사건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인데도 고객이 반항하면, 고객에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가 사법 정의를 왜곡하면 그는 도적이거나 다름 바가 없고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up>59)</sup>

55) Huxley, Andrew, “Burma: It Works, But Is It Law?” *Journal of Family Law*, Vol.27, 1988-1989. p.24,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16.

56) 비나야 다라는 문자 그대로 불교 계율 전문가이다. 승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계율이 필요했으며, 불교에는 비나야에 관한 문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나야 전문가들이 나중에 담마팟 저술에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50.

57)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p.44.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16.

58)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p.45.

59)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16.

## (2) 미얀마 재판 외 분쟁해결(ADR)제도

### 1) 개요

Maung(1963), Huxley(1995, 1997), Khin,(2007), Stanton(2014) 등 미얀마 분쟁해결제도를 연구해온 일련의 학자들에 의하면, 버마의 전통적인 정의(traditional justice)의 개념은 사회 내에서 조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다.<sup>60)</sup> 판사와 중재인들은 주로 분쟁당사자들을 타협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었다. 분쟁해결절차는 공식적이지도 않고 엄격하지도 않았다. 촌락에서는 연장자들이 조정 인이나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을 거주 인들은 자신의 분쟁이나 가족 내 분쟁을 그들 앞에 가져왔다. 마을의 연장자 장로들은 마을이나 가족의 평화나 조화를 위하여 무엇이 좋은지 고려해서 내려졌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원칙이 필요하다면 담마맛이 인용되거나 불교 자타카(Jataka)나 프야톤(Pyatton)의 지혜가 거론되었다.<sup>61)</sup> Maung(1963)에 의하면, 오늘날까지도 조정이나 중재가 마을에 살아남아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전통은 가족문제 뿐 만 아니라 촌락내의 다양한 문제에 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촌락 외부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적용되지 않고 사법제도는 보다 공식적이고 잘 조직화되어 있다. 때로는 마을 판사(village judge)들이 매우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경우 이들 중 일부는 국왕이 인정하여 항소심 판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로부터 일체 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에,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아주 작은 소액을 받았다. 이들은 그 마을에 항상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불공정할 일이 없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중재인들이었으며 타협의 원칙 하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다.<sup>62)</sup>

### 2) 규범으로서의 담마맛

담마맛의 성격에 대하여 헉슬리교수는 1995년과 1997년에 발표한 두 논문에서 차이점이 있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Huxley(1995)에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담마맛의 기능에 대한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담마맛은 문자로 기록된 법률(written law)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구술로 전해 내려온 법률(oral law)와는 그 파급효과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술로 전해진 법률은 구술자에 따라서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문자로 기술되자, 그 정확성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었다. 따라서 왕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하여 담마맛을 빌어서 자신의 통치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버마의 버간 왕조는 전성기 때, 문족의 국가들이나 태국 북부

60) Khin, E. Ei, "An Overview of Arbitration in Myanmar", 2007, p.296.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Stanton, H. Thomas,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utionary Tale of Colonial Burm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1, No.1, 2014, p.171.

61)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14.

62)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14.

치앙마이왕국을 공격해서, 적국의 왕실도서관에서 그곳의 담마땃을 탈취해 와서 버마 고유의 담마땃을 편찬하는데 활용하였다.<sup>63)</sup> 한편 16세기에 번성하기 시작한 법률가 집단은 독자노선을 걸으려 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들 역시 담마땃 편찬을 통해서 전문가로서의 성가를 높이려 하였다. 한편 승려집단인 승가는 담마땃에 신성함을 불어넣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교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세 집단 간의 각축 속에서, 왕의 지원 하에 저명한 고승이 펴낸 ‘공식적인 담마땃’(official Dhammathat)<sup>64)</sup>이 있었으며, 16세기 말, Kungya와 같이 저명한 변호사가 편찬한 담마땃<sup>65)</sup>도 있었다. 또한 18세기 들어서 승려들이 편찬한 담마땃도 있었다. 따라서 Huxley(1995)의 견해에 따르면 담마땃은 편찬의 주역들이 버마사회의 최상부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Zan(2000)이 분석한 17세기 버마 왕조의 칙령을 기록한 라자땃(rajathat)에 의하면, 판사들은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담마땃을 언급하라고 되어 있다.<sup>66)</sup> 그리고 더 나아가 칙령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러 담마땃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마땃의 제작년도와 장소를 고려해서<sup>67)</sup>, 담마땃에 기재되어 있는 규칙을 적용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칙령 상의 내용을 따르다면, 공식적인 법정에서도, 담마땃이 중요한 法源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Huxley(1997)의 견해에 의하면, 담마땃은 궁정에서 사용하는 법규범이라기보다는, 마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범이다. Huxley(1997)에 의하면 담마땃은 비공식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sup>68)</sup> 헉슬리교수는 담마땃이 왕의 궁정에서 작성되었다기보다는 농촌의 들판에서 만들어졌다고 본다. 즉 법률을 마을이나 촌락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라는 견해이다.<sup>69)</sup> 헉슬리교수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담마땃에서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죄도 단지 금융적 차원의 손해배상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담마땃에는 토지를 임대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서, 왕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

63)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78.

64)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77.

65)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80.

66)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p.64.

67) 헉슬리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버마 사회에서 담마땃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구술형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다. 적어도 9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러서 구술형태의 법률은 문자로 옮겨져서, 성문법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담마땃은 일종의 성문 법전이였다. 헉슬리교수는 이러한 법률상의 혁명은 당시 버마사회가 화전민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벼농사 위주의 경제구조로 변모하면서, 통치자들이 국가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데 그 이유를 찾고 있다.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75.

68)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74.

69)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74.

급이 없다. 이러한 근거 하에 헉슬리교수는 담마땃에 기록된 분쟁해결절차가 화전민 농업을 벗어나서, 평지에서 관개농사를 시작한 공동체에서 촌락 공동체 내부의 분쟁을 왕에게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쓰임새가 있었다고 본다.<sup>70)</sup> 이러한 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에서 담마땃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규범을 제시한다. 물론 분쟁 당사자 일방이 공식적인 법정에서 해결을 원한다면 그는 왕의 신하들로 구성된 법정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라자땃(rajathat)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sup>71)</sup> 이처럼 Huxley(1997)는 담마땃이 비공식적인 ‘재판 외 분쟁해결’(ADR)을 위한 규범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헉슬리교수의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한다면, 담마땃이 원래 왕과 새롭게 대두된 변호사 집단과 승가집단간의 경쟁 속에서 제작되었고, 초기에는 공식적인 법정에서 많이 활용되었지만, 일반 촌락에도 확산되어 버마 촌락공동체에서도 중요한 분쟁해결 규범으로 사용될 만큼 확산되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 IV. 현대 미얀마 분쟁해결제도

### 1. 관습법과 법다원주의

미얀마 분쟁해결제도가 복잡다기하게 된 데는 담마땃, 라자땃 그리고 판례집에 기원을 두고 있는 미얀마 관습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도법 혹은 버마불교도법 혹은 버마관습법은 자신이 불교도로서 고백하는 버마인들에게 적용된다.<sup>72)</sup> 그러나 19세기 들어서 미얀마가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영국의 보통법이 인도를 거쳐서 미얀마에 들어온 이후, 미얀마의 관습법인 담마땃과 보통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Maung(1963)과 Daniel, et.al(2011), Stanton(2014)이 지적하듯이,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였다. 즉 버마인 판사들이 법률을 다루고 있지만, 그들이 적용하는 법률은 영국의 보통법이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sup>73)</sup>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Huxley(1995)가 지적하듯이, 18세기말과 19세기 쯤 버마 왕조 말기에 편찬된 담마땃은 상당수가 버마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인 팸리어로

70)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75.

71) 그러나 상당수 경우, 이러한 공식적인 법정은 뇌물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72) 대부분 평원지역의 버마인들은 그들의 관습법을 버마불교도법이라고 호칭하면서 주로 결혼, 상속 등 가족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였다. 문홍안,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제28권 제2호, 2014, p.310.

73)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31.



쓰여졌다. 그러나 이 빨리어 담마땃은 버마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문헌이었다. 1880년대 초에 영국식민정부가 담마땃을 번역하기 위하여 담마땃 제출을 요청했을 때, 제출된 네 개의 담마땃 중 세 종류는 빨리어 담마땃이었다.<sup>74)</sup> 따라서 영국식민시기 동안에 버마인들에게 적용된 담마땃 조차도 현실과 괴리된 법률이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된 것은 미얀마의 평원지역은 영국 식민정부가 직접 통치하였지만 산지 지역 종족들에 대해서는 특별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그들만의 자치권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수 종족인 미얀마 불교도들에게는 영국 보통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산족이나 카친족, 아라칸 족 친족 등은 자신 고유의 관습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인정되었다.<sup>75)</sup> 이에 더하여,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미얀마와 유럽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자, 미얀마에도 회사가 설립되고 국제무역이 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담마땃에는 회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행위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관습법의 적용가능성이 약화되었다.<sup>76)</sup> 따라서 오늘날 미얀마는 문자 그대로 법다원주의(legal pluralism)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늘날 Daniel, et. al(2011)<sup>77)</sup>과 Stanton(2014)이 지적하듯이, 버마(미얀마)사회가 놀라운 만큼 찬란한 법률문화유산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범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전락하게 된 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 2. 현대의 중재제도

### (1) 1944년 중재법

미얀마로 국명을 개명하기 전, 즉 버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 1944년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1944년 제정한 중재법은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를

74)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p.91.

75) 1898년에 제정된 버마 법(Burma Law Act)에 의하면, 산 주에서 통용되는 법률은 그 법률을 준거하여 판시된 형벌들이 영국 지배하의 인도에서 시행되는 법률의 정신과 일치하는 한, 산주의 관습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 Hague Martinus Nijhoff, 1963, p.33.

76) 한편 영국 보통법이 도입되면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가 강화되자, 미얀마 각 마을의 촌장이나 연장자들의 역할을 축소되었다. 과거에 분쟁을 해결할 때, 타협과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는 단순히 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경제적 동기도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마을 촌장이 자기 집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가능한 많은 촌락민들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을 촌락민 사이에 분쟁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해자에게 심한 형벌을 가하는 경우는 드물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불어 같이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영원히 적대적 관계를 만들지 않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만족할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허용하는 것과 조화의 회복이 주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보통법의 도입으로 촌장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77) Daniel, R. J., Trebilcock, Michael, and Lindsey, Carson, "The Legacy of Empire: The Common Law Inheritance and Commitments to Legality in Former British Colonie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59, 2011, pp.169-170.

구성하는 중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sup>78)</sup> 그러나 중재인은 불편부당하게 행동해야 하며,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한 명의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양 중재인이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심판관(umpire)을 지명할 수 있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3명으로 구성될 때에는 일반적인 현대적 중재판정부 구성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가 지명한 2명의 중재인들이 나머지 한명의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sup>79)</sup> 이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수에 의한 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러나 중재합의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해도 된다. 한편 중재판정은 중재인에게 사건이 회부된 뒤 4개월 내에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중재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은 중재판정문의 형식에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중재판정문 자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한다고 해서, 의사결정 내용 자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을 수정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라고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1) 중재인이나 심판관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2) 중재판정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나, 판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3) 중재인이 분쟁 사건과 관련 있는 증거를 절차 진행 중에 고려하기를 거절한 경우, (4) 중재판정이 적절하지 않게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다.<sup>80)</sup> 그러나 1944년 중재법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해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81)</sup>

## (2) 2016년 개정중재법

### 1) 특징

개정중재법(2016)은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고 예외규정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안건형(2018)에 의하면, 국제중재에서 당사자들은 실체법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는 반면 중재지가 미얀마로 지정된 경우에, 사건이 국제중재의 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재로 판명이 된다면 반드시 미얀마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얀마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재조항에 계약의 목적물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문언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2)</sup> 셋째, 임시적 처분의 형태가 결정(decision), 명령(order),

78) Khin, E. Ei, "An Overview of Arbitration in Myanmar", 2007, p.296.

79) 일반적인 경우 3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때에는 두 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80) 본 절은 Khin(2007)의 논문을 요약한 것임.

81) 안건형, "캄보디아와 미얀마 중재법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9권 제2호, 2018, p.124. Khin, E. Ei, "An Overview of Arbitration in Myanmar", 2007, p.296.

82) 안건형, "캄보디아와 미얀마 중재법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9권 제2

지시(instruction)으로 구분되어 있는데<sup>83)</sup>, 이 임시적 처분 형태 간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 2) 개관

미얀마는 경제를 개방한 최근에 이르러 2013년 4월 16일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16년 1월 5일 개정 중재법을 통과시켰다. 미얀마의 개정 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따라서 제정되었다. 개정 중재법이 1944년 제정된 구중재법과 다른 점은 중재합의에 언급이 없을 경우, 중재인의 수는 한 명이어야 하고(12조), 복수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홀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옛 영국전통의 심판관 제도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복수로 구성될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인의 국적에 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국적은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중재인은 자신의 독립성이나 불편부당성에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조). 미얀마중재법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별하고 있다. 중재판정문의 양식에 있어서는 신중재법(2016)은 구중재법(1944)과 마찬가지로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문은 판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sup>84)</sup> 미얀마 개정중재법(2016)은 과거에 비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5)</sup> 외국중재판정이 미얀마법원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인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중재판정문은 미얀마법원에 중재합의문 원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45조). 46조에서는 외국중재판정 집행의 예외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중재합의 당사자들이 일종의 무능력일 때 (2)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법률 하에서 무효일 때 (3)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4) 중재판정이 중재에 제출된 사건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5)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들간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6) 중재판정이 아직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나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거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정지될 경우이다.<sup>86)</sup> 이외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이 미얀마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경

호, 2018, p.124. Khin, E. Ei, "An Overview of Arbitration in Myanmar", 2007, p.296. Finch, James and Thida, Aye,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Myanmar's Arbitration Law",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12, No.1, 2016. p.237.

83) 안건형, "캄보디아와 미얀마 중재법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9권 제2호, 2018, p.127.

84) Finch, James and Thida, Aye,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Myanmar's Arbitration Law",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12, No.1, 2016. pp.235-252.

85) Finch, James and Thida, Aye,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Myanmar's Arbitration Law",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12, No.1, 2016. pp.235-252.

86) San Pe Robert, "Myanmar Arbitration: Progress Made and the Way Ahead", *Arbitration in Asia*, 2017, p.12.

우거나<sup>87)</sup>, 분쟁의 소송물이 미얀마 법률 하에서는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미얀마법원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sup>88)</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얀마 개정중재법은 상당한 부분 모델중재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중재의 개념 정의 등 일부조항은 일반적인 중재법과는 차이가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 V. 비즈니스협상문화

### 1. 미얀마 문화

#### (1) 인사예절

요즈음에는 도시의 남자들의 경우는 악수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미얀마에는 손으로 악수하는 풍습은 없었다. 따라서 지금도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그냥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말로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면 매우 어색하게 생각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sup>89)</sup> 미얀마 국민의 85%는 불교를 신봉하고 있어서 불교가 문화에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승려에게 인사할 때에는 불교식 인사법으로서 반드시 두 손을 합장한 채 인사해야 한다.<sup>90)</sup> 미얀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한 관계로 비즈니스 상담 시 여성들이 대화 상대방으로 나올 때가 가끔 있다.<sup>91)</sup> 이들과 처음 대면 시 악수 보다는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해오는 경우 이에 응하면 된다.<sup>92)</sup>

#### (2) 식사예절

미얀마에서는 식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을 사용한다. 식탁에 놓여져 있는 반찬들은 수저로 자기 접시에 떠 놓고 밥과 함께 손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식탁 옆에는 손을 씻기 위한 세면도구 및 세면기가 어느 집이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맨손의 오른 손으로 밥을 먹는 관계로 수저로 국을 떠 먹을 때나 반

87) 사실상 일부 국가에서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을 집행 거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0권 제1호, 2010.

88) Finch, James and Thida, Aye,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Myanmar’s Arbitration Law”,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12, No.1, 2016. pp.235-252.

89) 양승윤,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262.

90) 양승윤,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282.

91) 동남아시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고 사회적 지위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신윤환, 『동남아문화산책』 창비 2008.

92) 코트라, 『아시아 상거래 10국 10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찬들을 수저로 자기 접시에 가져올 때에는 반드시 왼손을 사용해야 한다. 오른 손은 밥이나 반찬들로 인하여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찬을 뜯 때에는 웃어른이 뜯 다음에 떠야 하고 반드시 먹을 양만 자기 접시에 담아 음식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국을 떠먹을 때에도 후루룩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또한 식사 도중 기침이 나올 때에는 되도록 식탁 밖으로 나와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것이 예절이다.<sup>93)</sup> 미얀마 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메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미얀마 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으며 일부는 돼지고기 역시 먹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무난한 메뉴는 닭고기와 생선으로 구성된 요리이다.<sup>94)</sup>

### (3) 앉는 예절

미얀마에서는 어떠한 종족이든 어떠한 종교를 믿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유유서의 위계질서가 철저하게 지켜진다. 아랫 사람이 웃어른 앞에 앉을 때에는 무릎이나 허벅지를 드러내 놓고 앉아서 안된다. 사내아이들의 경우는 웃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좌하여야 한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을 수 는 있으나 승려 앞에서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으면 큰 실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정좌하거나 아니면 웅크리고 앉아야 한다.<sup>95)</sup>

## 2. 협상 요인

### (1) 자존심

미얀마 인들은 I am sorry라는 표현을 안 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므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더구나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문맹률이 영국보다도 낮았던 만큼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sup>96)</sup> 또한 담파 락이라는 세계적 법률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12세기에 벌써 변호사가 있을 만큼 문화적 수준이 높은 국가로서 민족적 자긍심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미얀마 정부 관리는 일반인에 비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며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 정도가 더해간다.<sup>97)</sup> 따라서 미얀마 인들과 협상을 할 때는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미얀마인들은 베트남인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베트남의 “일원의 품삯도 일전의 상금만 못하다”는

93) 최재현, “미얀마 생활문화연구”, 『한국태국학회 논총』, 한국태국학회, 제8집, 2000, pp.228-229..

94) 코트라, 『아시아 상거래 10국 10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95) 양승윤,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p.284.

96) Huxley, Andrew, “Positivists and Buddhists: The Rise and Fall of Anglo-Burmese Ecclesiastical Law”, *Law and Social Inquiry*, 2001. p.122.

97) 코트라, 『아시아 상거래 10국 10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속담은 열배의 품삯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sup>98)</sup> 이처럼 베트남 역시 명예중시 문화를 가지고 있다.

## (2) 겸손함

미얀마인들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대한 문화적 차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다.<sup>99)</sup> 그러나 최근의 실증분석 연구에 의하면 미얀마인은 관대함, 부끄러움, 예의,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를 하지 않음 등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0)</sup> 겸손하다는 측면은 태국인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태국인들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Kreng Jai*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sup>101)</sup>, 부드러운 협상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질에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3) 인내심

미얀마는 고질적인 외환부족 문제로 인하여 엄격한 수입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수입활동이 가능하며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시장 환율보다 10-15% 비싸게 거래되는 수출업체의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건별로 수입허가 심사를 하며 수입허가서 신청에서 승인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상무부 차원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무역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업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인내심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상담이 이루어져도 한국으로 귀국해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미얀마의 열악한 전기사정 통신사정 때문에 전화 팩스 이메일이 자주 고장 나기 때문이다(코트라).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sup>102)</sup> 미얀마 비즈니스맨들은 통신수단으로서 이메일을 가장 선호한다. 또한 미얀마 인들은 No라고 응답하는 데 서투르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98) 정용균, “베트남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전략: 지역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8권 제4호, 2016, p.233.

99) 정용균, “태국의 분쟁해결 및 협상전략: Hofstede의 비교문화경영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한국태국학회, 제21권 제1호, 2016.

100) Aung Moe and Ohbuchi, “An Empirical Study of Cultural Values in Myanmar”, *Tohoku Psychologica Folia*, Vol.67, 2008. p.17.

101) 정용균, “태국의 분쟁해결 및 협상전략: Hofstede의 비교문화경영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한국태국학회, 제21권 제1호, 2016, p.117.

102) 코트라, 『아시아 상거래 10국 10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 VI.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미얀마(버마)의 분쟁해결제도와 협상문화를 고찰하였다. 버마가 다른 동남아시아국가들과 차이점이 큰 부분은 15세기경부터 매우 정교한 사법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판사는 불교법 문헌인 담마땃을 법원으로 하여, 판결을 내렸고, 그 때부터 변호사도 있었다는 점이다. 19세기에 버마 쯔바웅왕조 법정에서 소송절차를 지켜보았던 영국관리는 버마 쯔바웅 왕조의 소송절차가 어느 유럽국가보다도 형식적이며 공식적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담마땃의 근간이 되는 담마(法)는 유럽의 자연법에 가까운 불멸의 원칙을 의미한다. 담마땃은 그 자체가 현재의 법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담마땃은 현대의 법전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조항들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원칙을 기재해 놓은 문헌이다. 허슬리교수는 버마 관습법의 법원인 담마땃이 비공식적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서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103)</sup>

이러한 분쟁해결 전통은 영국의 식민정부가 버마를 통치한 시기에도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버마 식민정부는 법다원주의(legal pluralism)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식적으로는 영국의 보통법을 계수한 인도 법률을 활용하여 통치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과거 담마땃 등 버마 관습법을 유지하였다.<sup>104)</sup> 이러한 담마땃은 오늘날 버마불교도법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전통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촌락에서는 분쟁해결절차는 공식적이지도 않고 촌락에서는 연장자들이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을 거주민들은 자신의 분쟁이나 가족 내 분쟁을 그들 앞에 가져왔다.<sup>105)</sup> 마을의 연장자 장로들은 마을이나 가족의 평화나 조화를 위하여 무엇이 좋은지 고려해서 내려졌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원칙이 필요하면 담마땃이 인용되거나 불교 자타가(Jataka)나 Pyatton의 지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얀마는 7개 행정구와 7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다종족국가이다. 따라서 종족간의 결혼문제 등 첨예한 법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103)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74.

104) Huxley, Andrew, "Positivists and Buddhists: The Rise and Fall of Anglo-Burmese Ecclesiastical Law", *Law and Social Inquiry*, Vol.26, No.1, 2001. p.122.

105) 세계 각국의 촌락문화는 조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권 제1호, 2014. pp.85-109. 정용균, "인도네시아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ADR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25권 제3호, 2016. pp.73-108. 정용균, "캄보디아의 분쟁해결문화와 협상: ADR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27권 제2호, 2018. pp.3-30. Chung, Yongkyun, "Combining Arbitration with Mediation: Two Cultures of China and Malay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3, 2016. pp.149-173.

수 없다.<sup>106)</sup> 더구나 개방정책 기조에 따라서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정부가 2013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2016년 신중재법을 제정한 것은 외국투자자의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미얀마는 적어도 3종의 법률체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영국 식민시대에 인도로부터 계수 받은 보통법 체계이다. 다른 하나는 버마왕조들로부터 면면히 이어 내려온 전통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21세기에 이르러 미얀마 경제를 세계경제질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도입한 UNCITRAL 중재법 등 Lex Mercatoria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버마왕조의 분쟁해결제도는 현대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공식적인 법정에서 형식적인 재판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현대의 법원제도와 유사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판사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담마땃이나 기타 법원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중재인이나 조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동시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法源을 달리하여 국왕의 칙령인 라자땃을 통하여 재판을 한 점에서는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sup>107)</sup>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담마땃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한 점이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둘째, 중재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요청된다. 셋째,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회사법 등 법령제정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ADR과 시장경제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간의 조화문제가 부상하고 있다.<sup>108)</sup>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협상문화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향후,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산되거나, 개별적인 현장조사나 실증분석 연구를 통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분쟁해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 학계나 실무 업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106) 문홍안,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제28권 제2호, 2014, p.310.

107) 정용균,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8권 제2호, 2018, pp.3-43.

108) Chung, Yongkyun, “An Eclectic View on the Relative Role of Rule of Law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Leg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Case of the ASEAN Region”, *International Trade, Politics and Development*, Vol.2, 2018, pp.38-56.



## 참고문헌

- 김성현, 「미얀마 종교와 사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진현·정용균, “미국의 사법형 ADR제도와 그 함의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1권 제3호, 2011.
- 다카야 요시카즈(高谷好一), “지역이란 무엇인가?”, 야노 토루(아시아지역연구회 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1998.
- 문홍안,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제28권 제2호, 2014.
- 밀턴 오스본(조흥국 역), 「한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오름, 2000.
- 박장식, “미얀마(버마) 의 종족집단과 종족 분쟁”, 「지역연구」, 2권 4호, 1993.
- 신윤환, 「동남아문화 산책」, 창비, 2008.
- 안건형, “캄보디아와 미얀마 중재법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제19권 제2호, 2018.
- 양승윤,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 이상국, “또 다른 식민성: 버마 종족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카렌족의 식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한국동남아학회, 22권 1호, 2012.
- 조흥국, “소승불교 동남아시아의 민간신앙, 태국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한국민속학회, 제9권, 2001.
- 정성훈·권오윤, “미얀마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4호, 2011.
- 정용균, “중국의 민간조정제도 논쟁연구: 세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제14권 제2호, 2010.
- 정용균,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0권 제1호, 2010.
-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4권 제1호, 2014.
- 정용균, “인도네시아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ADR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25권 제3호, 2016.
- 정용균, “태국의 분쟁해결 및 협상전략: Hofstede의 비교문화경영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문집」, 한국태국학회, 제21권 제1호, 2016.

- 정용균, “베트남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전략: 지역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8권 제4호, 2016.
- 정용균, “캄보디아의 분쟁해결문화와 협상: ADR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27권 제2호, 2018.
- 정용균, “말레이시아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 ADR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 정용균,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8권 제2호, 2018.
- 정용균·하홍열,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BOP비즈니스모델연구: 아세안시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제21권 제1호, 2017.
- 조은래,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소고”,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2.
- 코트라, 『아시아 상거래 10국 10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 최재현, “미얀마 생활문화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한국태국학회, 제8호, 2000.
- 황루시, “미얀마 샤머니즘의 개관과 연구동향”, 『한국무속학』, 한국무속학회, 제22집, 2011.
- Aung Moe and Ohbuchi, “An Empirical Study of Cultural Values in Myanmar”, *Tohoku Psychologica Folia*, Vol.67, 2008.
- Chang, L. C. “Subcultural Differences in Taiwanese and Burmese Chinese Business Negotiation Styl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012.
- Chung, Yongkyun, “Combining Arbitration with Mediation: Two Cultures of China and Malay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3, 2016.
- Chung, Yongkyun, Ha, Hong-Youl, and Kim, Kwang-Soo, “Combining Arbitration with Mediation: Two Cultures of China and Malay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3, 2014.
- Chung, Yongkyun and Ha, Hong-Youl, “Arbitrator Acceptabi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Trading Firm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27, No.3, 2016.
- Daniel, R. J., Trebilcock, Michael, and Lindsey, Carson, “The Legacy of Empire: The Common Law Inheritance and Commitments to Legality in Former British Colonie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59, 2011.
- Finch, James and Thida, Aye,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Myanmar’s Arbitration Law”,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12, No.1, 2016.
- Gupta, Surie Javidan and Chokor, “Southern Asia Cluster Where the Old Meets the New?”,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37, No.1, 2002.
- Hofstede, Geert, Hofstede, J. Gert, and Michael Minkov,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ed, 2010 (차재호 나은영 공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제3

- 판, 학지사, 2014).
- Huxley, Andrew, “Burma: It Works, But Is It Law?” *Journal of Family Law*, Vol.27, 1988-1989.
- Huxley, Andrew, “Buddhism and Law: The View from Mandalay”,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18, No.1, 1995.
-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 Huxley, Andrew, “Positivists and Buddhists: The Rise and Fall of Anglo-Burmese Ecclesiastical Law”, *Law and Social Inquiry*, Vol.26, No.1, 2001.
- Khin, E. Ei, “An Overview of Arbitration in Myanmar”, 『現代社會文化研究』, Vol.38, 2007.
- Lingat, R., “Evolution of the Conception of Law in Burma and Siam”, Lectures delivered before the Siam Society on Wednesday 9th March 1949.
-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3.
- Myaing, A. Aye, *History of Judicial System in Konbaung Period*, Mandalay, 2007.
- Ryuji, Okudaira, “The Role of Kaingza, Manuyaza, An Eminent Jurist of the 17th Century in the Development of the Burmese Legal Histor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No.27, 1984.
- Ryuji, Okudaira, “A Comparative Study on Two Different Versions of the Manugye Dhammthat: A L Burma(Myanmar)”,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No.59, 2000.
- Ryuji, Okudaira, “How Judges Used Dhammathats (Law Books) in Their Courtes in 18th-19th Century Myanmar(Burma) with Special Reference to Yezaijo Hkondaw Hpyatohton”,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No.66, 2003.
- San Pe Robert, “Myanmar Arbitration: Progress Made and the Way Ahead”, Arbitration in Asia, 2017.
- Stanton, H. Thomas,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utionary Tale of Colonial Burm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1, No.1, 2014.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2000.

## ABSTRACT

###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nd Business Negotiation of Myanmar

Yongkyun Chung

Myanmar has witnessed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The cultural heritage of Myanmar (Burma) inherited from ancestors is law literature such as Dhammathat and Rajathat. Burma is a unique country in Southeast Asia in a sense that it already had a modern law system. For example, there has been a legal profession even in 12th century AD. According to Rajathat, lawyers were required to wear a uniform in court. Furthermore, lawyers and Judges participated in legal proceedings from the 15th century. As to the role of Dhammathat, there are conflicting views in the academic community. According to Professor Andrew Huxley, the profound literatures of Dhammathat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source of law in Burmese court in ancient times. Dhammathats have flourished in the struggle among the King, lawyers, and monks in old Burmese society. This customary law combined with Rajathat provided a guidance of legal proceedings in Burmese court, as well as village settlement. This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system reaches modern times in the form of Buddhist family law in Myanmar. Nowadays, the law system of Myanmar looks like a legal pluralism since the customary laws of Burma, as well as Shan and Arakan, are effective and co-exist with common law adopted at the colonial period. In recent times, Myanmar has enacted new arbitration laws (2016) in order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Key Words** : Myanmar, Andrew Huxley, Dhammathat, Rajathat ADR, new arbitration law